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문구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용어를 정리하고,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함
-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입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 및 관련 서식의 용어 변경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비료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8조 및 11조, 별지 제12호 및 제16호)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및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관련 서식의 용어 변경함

-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안 제10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보증서류, 유해 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가 동일함에도 비료수입업 신고 세부 내용에 누락(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 되어 있으므로 보완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13조 신설,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서식 신설함
- 거짓광고·과대광고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17조)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행정처분 내역, 비료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도록 변경함
-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제2호의 1. 일반기준)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각 2배로 재설정함
- 각종 신청서,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안 별지 제 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 각종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을 “또는”으로, “설정·폐지(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를 “설정·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연구기관에서”를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종류 및 명칭”을 “종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중금속 검사”를 “위해성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 1의”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규격에서 정한”으로, “중금속”을 “위해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금속의”를 “중금속 등의”로,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중금속 검사”를 “위해성 검사”로,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을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또는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별표 1”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중금속”을 “위해성”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한 비료이거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료에 대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하

고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분분석서는**”을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는”으로, “**성분분석을**”을 “성분분석 및 재배시험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폐업신고**”를 “휴·폐업신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제7조제1항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 및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 및**”을 “법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으로, “**폐업에**”를 “휴·폐업에”로, “**폐업신고서**”를 “휴·폐업신고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등록증(비료수입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거짓광고·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의 효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또는 제조원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3. 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4.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또는 제조원료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3. 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4. 농촌진흥청, 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료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비료의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할 우려

가 있는 표현의 광고

제17조제1항 중 “**폐업신고**”를 “**휴 · 폐업신고**”로, “**폐업에**”를 “**휴 · 폐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국 · 수입량 · 판매량 · 재고량**”을 “**수입국 · 수입량 · 수입건수 · 판매량 · 재고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폐지(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 ----- 또는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② ----- ----- -----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에 따라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생략)	제4조(시료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4. (생략)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등에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종류

3.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

----- 비료 -----

----- 위해성 검사-----

-----.

② -----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규격에서 정한 -----
위해성 -----

-----.

③ ----- 중금속 등의 ----- 비료 -----

관한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

위해성 검사
사본과 수출국 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또는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④ 영 제10조제1항
위해성
다만,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한 비료이거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료에 대해서는 위해성검사를 생략하고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④ (생략)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제5호에-----
----- 성분분
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는 -----

---- 성분분석 및 재배시험을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휴·폐업신고-----
-----.

③ (생 략)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제7조제1항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 및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 휴·폐업에 -----

----- 휴·폐업신고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등록증(비료수입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신 설>

제16조의2(거짓 광고 · 과대 광고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
른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비료의 효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또는 제조원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3. 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사
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4.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
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
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과
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비료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
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또는 제조원료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3. 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오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4. 농촌진흥청, 법 제4조의2에 따
른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 관

제17조(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

런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료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비료의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제17조(보고 등) ①-----

----- 휴
· 폐업신고 -----

----- 휴· 폐업에 -----
-----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

----- 국립농산
물품품질관리원장-----.

③ -----

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
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
량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 1. (현행과 같음)
- 2. -----
----- 수입
국·수입량·수입건수·판매량
·재고량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1.5퍼센트 이내로 부족하고, 주성분량이 각각 그 보증성분량의 90퍼센트 이상이며, 각각의 주성분의 합계량이 보증하는 주성분량 합계량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본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제품성분 및 규격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이 그 결과를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마. 제2호가목2)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바.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명칭의 비료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자체 품질검사에 의한 모집단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경우만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아.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비료생산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진열·판매</u>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8호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영업정지 <u>6</u> 개월, 당해 제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u>4</u> 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등록취소, 당해 제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나) 10퍼센트 이상				
4)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u> 하거나 공급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		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당 제품 회수 수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당 제품 회수 수
5)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u>설정되지 않은 비료</u> 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5호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가) 생산시설 미달 나) 공통시설 미달	법 제20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u>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금지

· 진열 · 판매 ·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4</u> 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4</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라) 부속도(씩혀서 익히는 정도) 기준 미만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7호 법 제19조 제4호 ·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경고	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해당 비료의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8)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u> · 진열 · 판매 ·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등록취소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유통기한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u>보관·양도</u>·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생산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법 제19조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개월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u>·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개월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u>보관·양도</u>·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u>2</u>개월	영업정지 <u>6</u>개월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u>보관·양도</u>		영업정지 <u>6</u>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폐기	

· 진열 · 판매 ·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u>보관</u> · 양도 · 진열 · 판매 ·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사)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u>보관</u> · 양도 · 진열 · 판매 ·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영업정지 <u>4</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 · 폐기	등록취소, 해당 제품 회수 · 폐기	
	법 제20조	등록취소		
	제1항제9호			
	법 제20조제1항			
	제10호 · 제11호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등록취소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나. 비료수입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0조	해당 명칭의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효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u>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u>하거나 공급한 경우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나) 10퍼센트 이상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여 <u>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u>하거나 <u>공급</u>한 경우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2항제1호 법 제19조 제1호 법 제20조 제2항제2호 및 제6호 법 제20조 제2항제3호	비료 수입·판매금지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양도금지 영업소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2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제품 회수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도금지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4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품 회수
--	---	---	--	---

다) 30퍼센트 이상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u>6</u> 개월, 해 당 제품 회수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 수 · 양도금지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u>설정되지 않은 비료</u> 를 수입하여 <u>보관 · 양도 · 진열 · 판매 · 유통 하거나 공급</u> 한 경우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2항제4호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 증성분량(중량 및 공정규 격에 정해진 그 밖의 규격 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 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비료를 수입하 여 판매한 경우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u>2</u> 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4</u> 개월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u>2</u> 개월, 해 당 제품 회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u>4</u> 개월, 해 당 제품 회 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 품 회수
다) 30퍼센트 이상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u>6</u> 개월, 해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	

라) 부속도 기준 미만	법 제19조 제3호 법 제20조 제2항제5호	당 제품 회수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2개월, 해 당 제품 회 수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6개월, 해당 제 품 회수
6)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4호 · 제5호, 법 제20조 제2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 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어 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 열·판매·유통하거나 공 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유통기한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 칭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2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 지 6개월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 제19조	경고	해당 명칭의	해당 명칭의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1) 생산 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다)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마)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바)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	제5호, 법 제20조 제1항제8호		비료 영업정지 <u>2</u>개월	비료 영업정지 <u>6</u>개월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개월
		경고	영업정지 <u>2</u>개월	영업정지 <u>6</u>개월
		영업정지 <u>6</u> 개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영업소 폐쇄, 해당 제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u>6</u> 개월	영업소 폐쇄,	

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월, 해당 제품 회수·폐기	해당 제품 회수·폐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제7호	영업소 폐쇄		
8) 법 제14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장부를 기재 및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제8호·제9호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경고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영업소 폐쇄
나) 장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2</u> 개월	해당 명칭의 비료 영업정지 <u>6</u> 개월

다. 시험연구기관(현행과 같음)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0일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비료의 종류	주성분 함량	유해성분 함량	그 밖의 규격	원료명

신청사유

「비료관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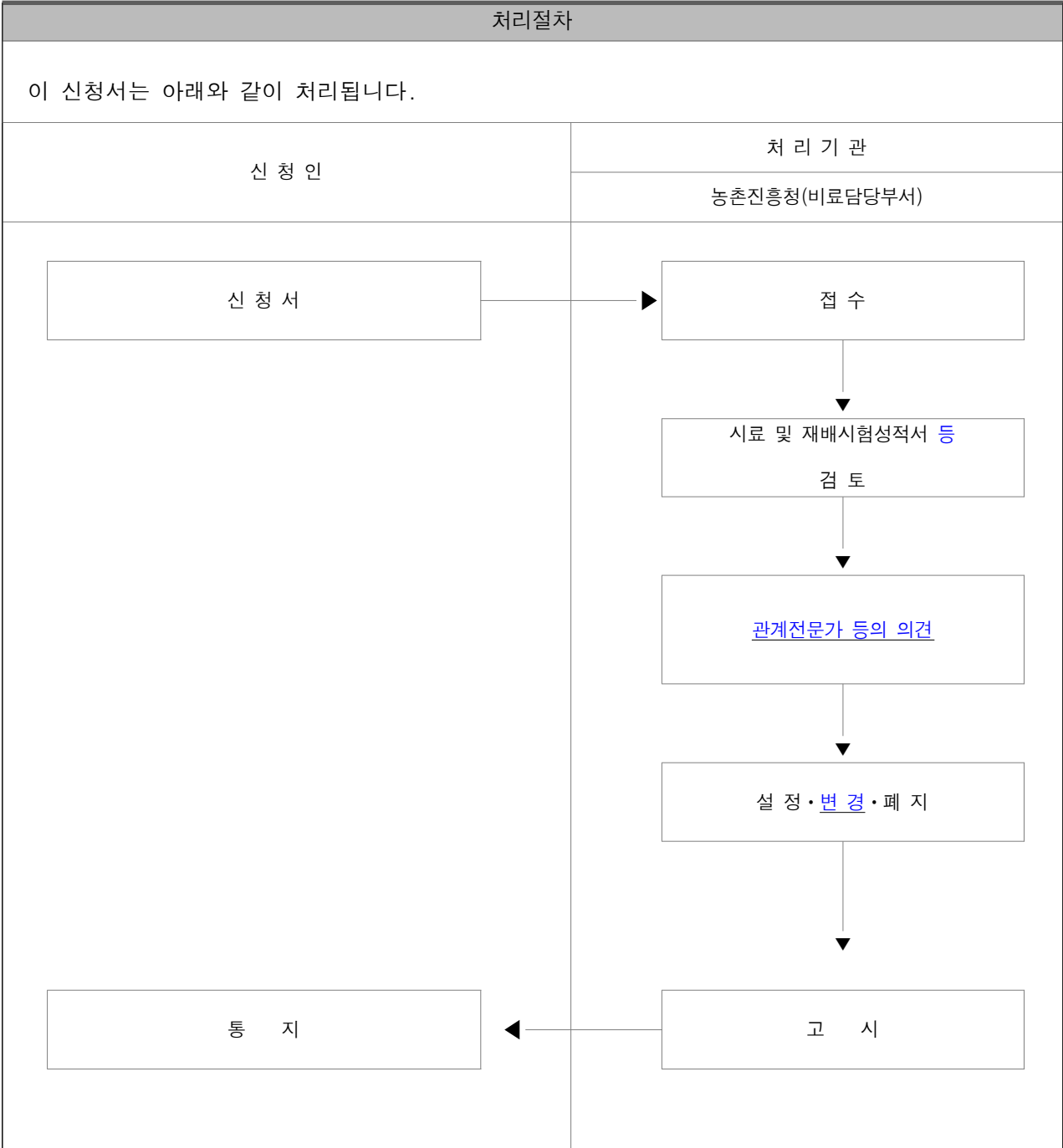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시료	1. 재배시험성적서 1부 2. 제품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시료 500그램	수수료 없 음
--------------	--	----------------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면제)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
	도착일	B/L물량 kg
	전화번호	수출국
	용 도	
	원료명 및 배합비율	

시료채취 장 소	
-------------	--

「비료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면제)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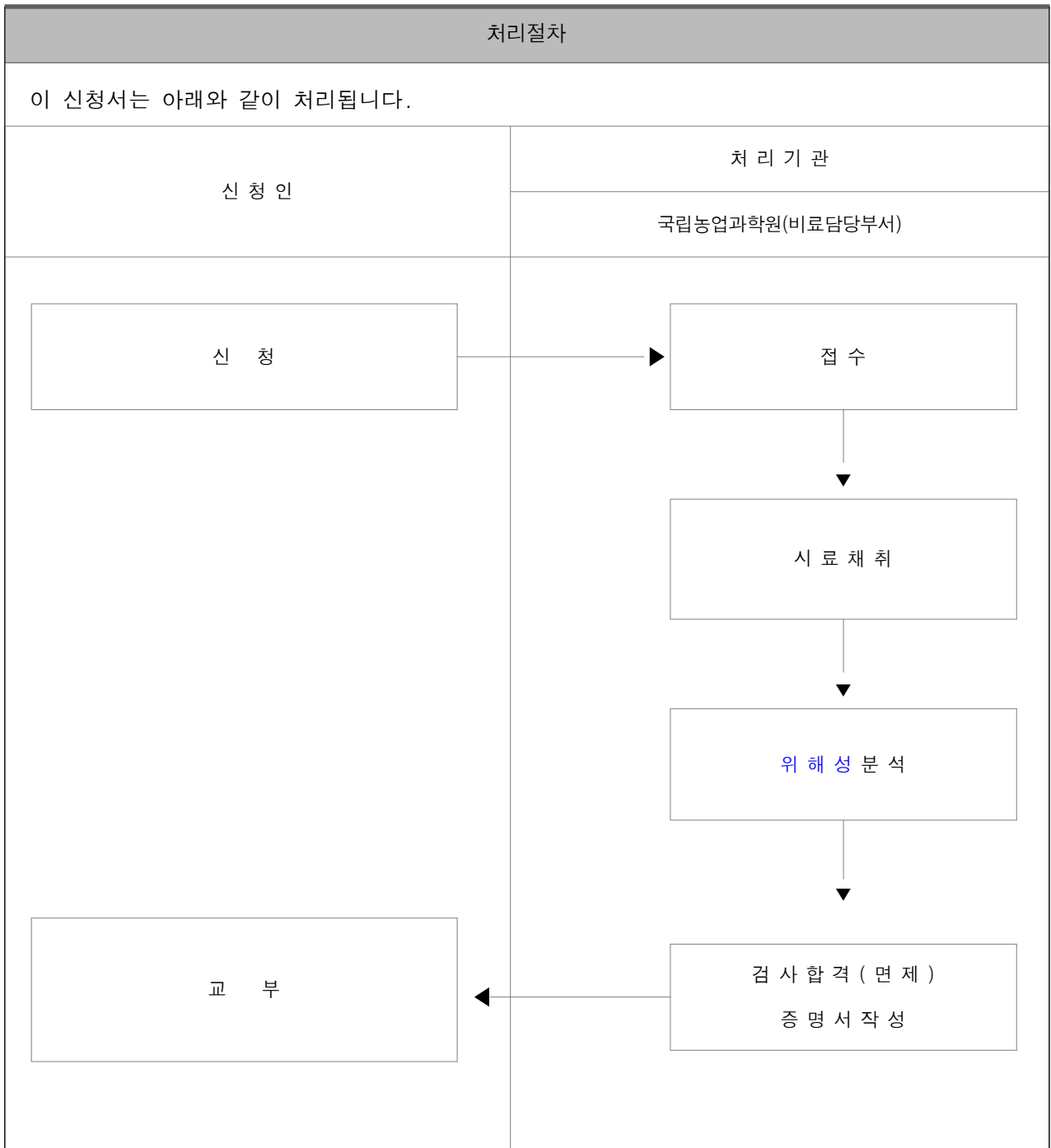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비료수입업신고증 사본 1부 2. 수출국의 정부기관 ,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또는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위해성 검사성적서 1부(면제신청의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	---	------------



비 고 : 수출국의 [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또는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위해성](#)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위해성](#) 분석을 생략한다.

수입비용 등의 **위해성** 검사합격(면제) 증명서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수입비료	종류 및 명칭	HS번호
	도 착 일	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량 kg
	도 착 항	수 출 국
	용 도	
검사성적	성 분 명	함 량
	합격여부 [] 합 격 [] 검 사 면 제	

「비료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해성 검사에 합격(면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의
의
의

국립농업과학원장

직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료의 <u>종류</u>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m ²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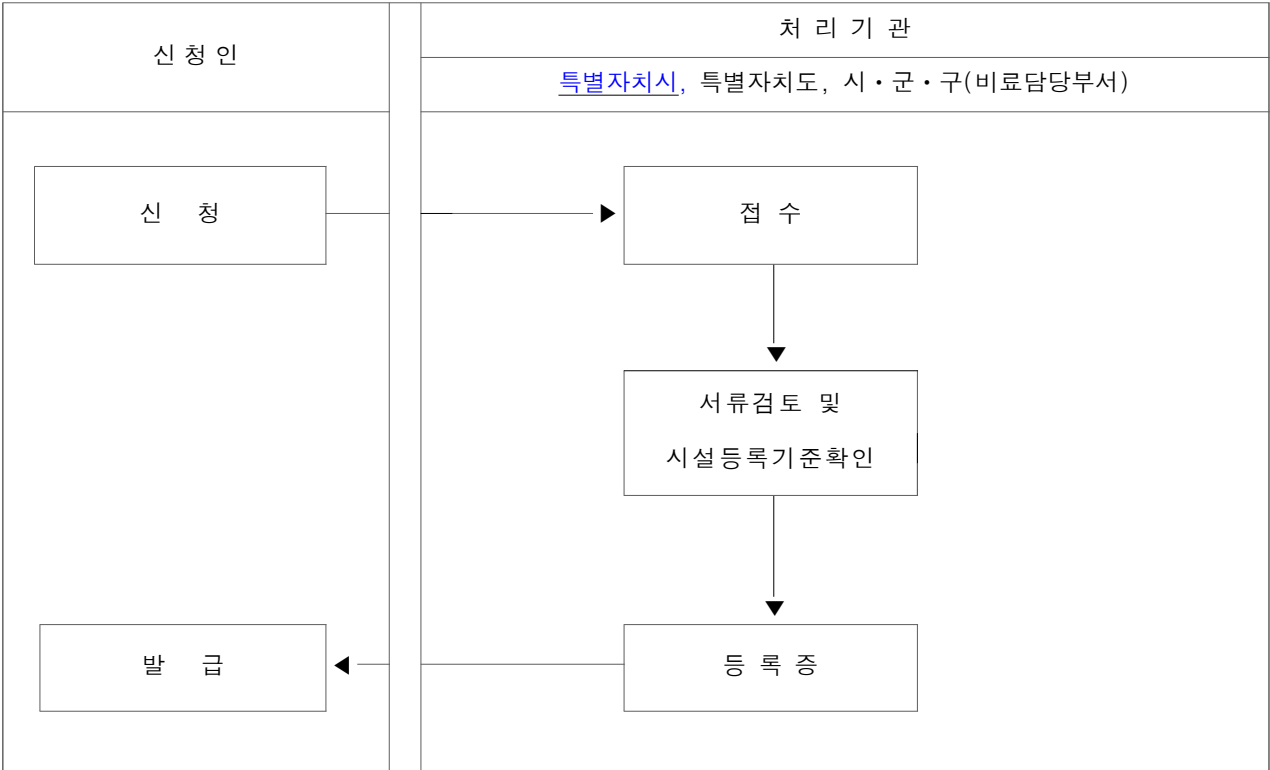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u>종류</u> 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료의 <u>종류</u>				
제조장				
소재지				
보관창고				면적
소재지				m ²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항 목	변경신고내용	사 유	기록자(인)

제 호

비료생산업 등록증

1. 법인(상호)명:
2. 주 소: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제조장 소재지:
6. 비료의 종류: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 등록사항

연월일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 증 성분량	유 해 성분량	그 밖의 규 격	원 료 투입비율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	--

[]등록 []신고	번호	제 호
----------------	----	-----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라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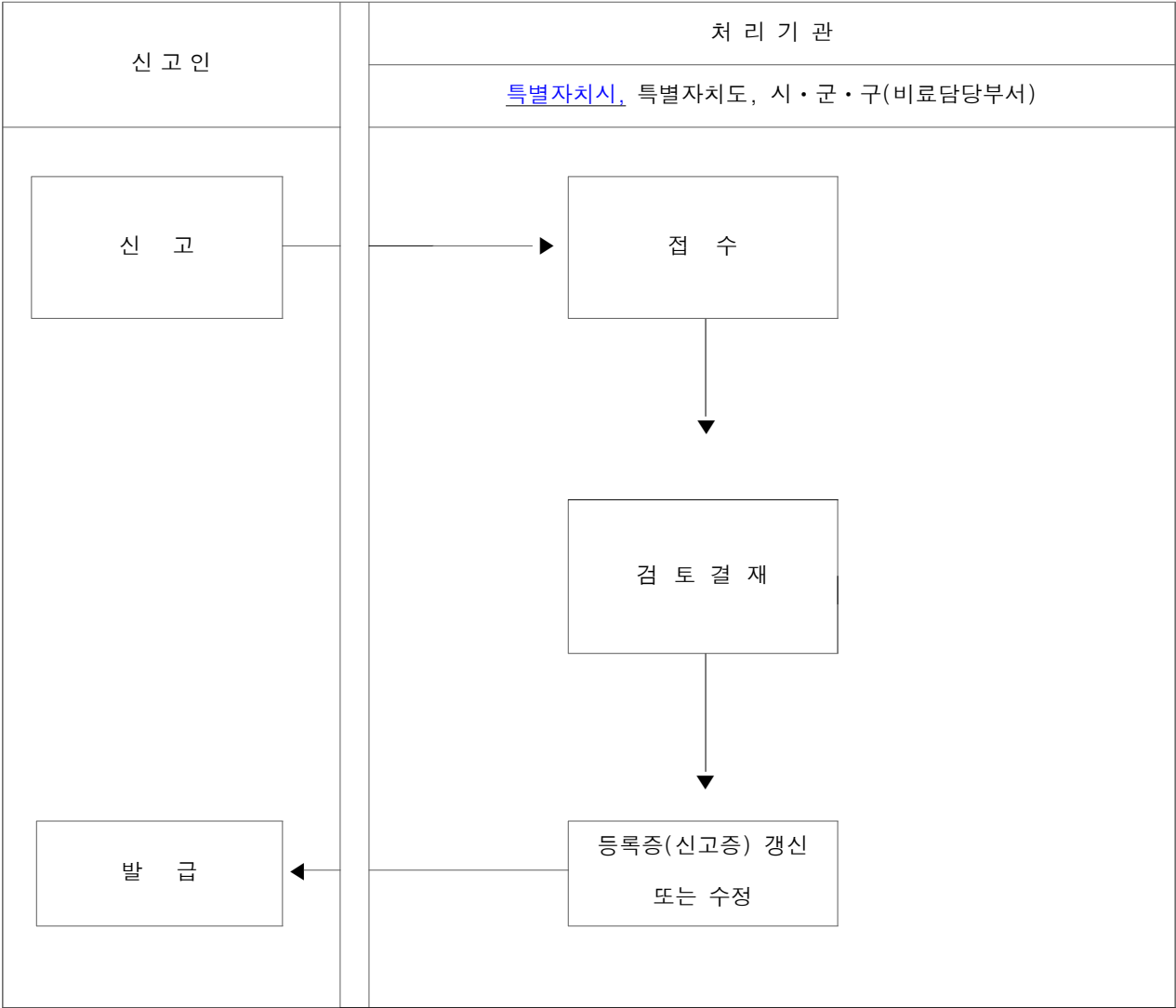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1. 1부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참고사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보증성분 등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제출서류와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위승계 신고사항	법인(상호)명	변경 전	등록 · 신고번호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상속 [] 양도 · 양수 [] 합병	
승계일자	년 월 일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등록증(비료수입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1부 및 등록증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등록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비료관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와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비료담당부서)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법인(상호)명			<u>비료생산업 등록번호</u>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u>휴업기간</u>	<u>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u>					
	<u>폐업일</u>	<u>년 월 일</u>					
	사 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	------------

비료수입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보관창고의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보증성분 량	유해성 분량	그 밖의 규격	수출국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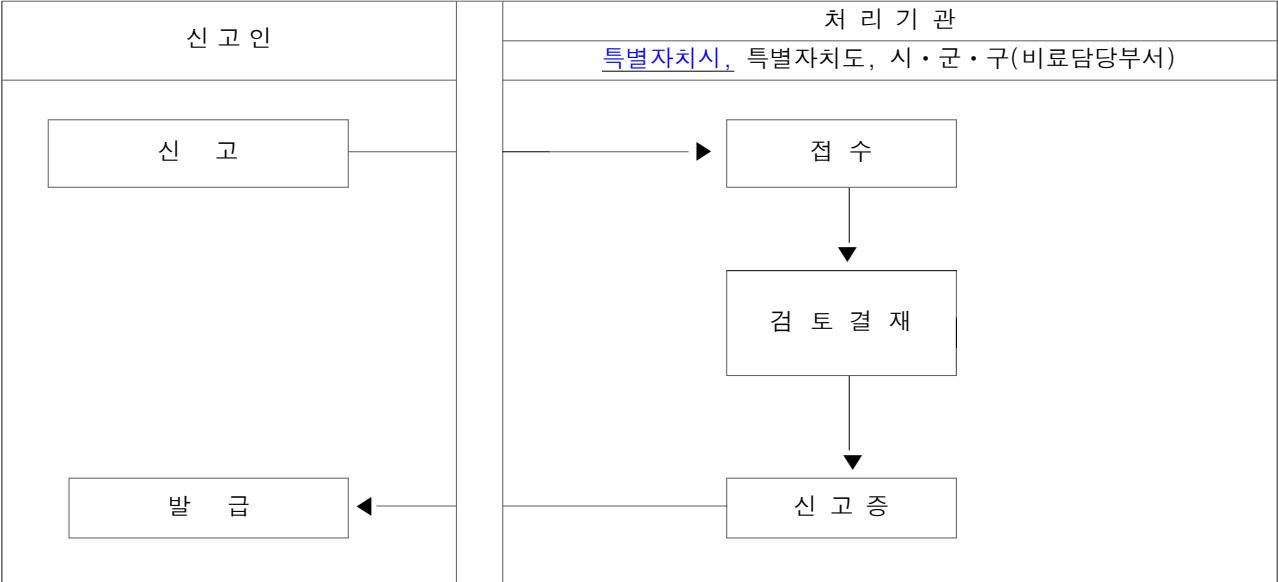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종류 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첨 양식(비료수입업 신고서의 구비서류 제1호 관련)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1. 수입업체명
- 2. 비료의 종류
- 3. 제조공정
-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 · 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비료수입업 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일		
수입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보관참고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항 목	변경신고 내용	사 유	기록자(인)
행 정 처 분 사 항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록자(인)

제 호

비료수입업 신고증

1. 법인(상호)명:
2. 주 소: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영업장 소재지:
6. 비료의 종류:
7.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 쪽)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 신고사항

연월일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 증 성분량	유 해 성분량	그 밖의 규 격	원 료 투입비율

비료수입업

[]휴업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폐업일	년 월 일	
	사유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증	수수료
		없 음

[] 비료생산업 등록증
[] 비료수입업 신고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

[]등록 []신고	번호	제 호
----------------	----	-----

[] 생산업자 [] 수입업자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 「비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함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기재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비료생산업 등록증 ☐ 비료수입업 신고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아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 음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보고

「비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등 록 (신고) 업 종	비료의 종류 및 명칭	<u>수입국</u>	<u>수입 건수</u>	생산량(수입량)				판 매 량			재고량 (A-B)
		<u>(수입 비료만 작성)</u>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계 (B)	

끝.

발 신 업 체 명 의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